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61
------	-----

2015. 6. 2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16일, 권미경 의원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6.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권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민에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시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
- 시장은 근로권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은 근로권 교육 시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 시장은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마련하도록 함
(안 제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관내의 사업장에
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피해구제
등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근로관계로 인
한 분쟁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나. 서울시의 노동교육 현황 및 개요

- 서울시는 현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근로자와 사용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참고자료 1)
 -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을 포함한 교과과정의 개선, 지역별 시민노동학교의 운영 등이 있음

-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는 성인, 사용자, 청소년, 공무원 등 노동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의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원하는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고 맞춤형 강의의 진행을 통하여 노동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표 1>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 실적

	구분	계	성인	사용자	청소년	공무원
2014년	교육인원(명)	12,358	2,320	405	7,183	2,450
	교육횟수(회)	144	21	5	105	13
2015년 (6월 15일 기준)	교육인원(명)	6,234	2,078	70	3,749	337
	교육횟수(회)	30	14	1	11	4

- 서울시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위하여 분야별로 강사풀을 구성하고 교육대상자로부터 강의평가설문 실시와 강의기법 및 교육내용의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강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표 2> 분야별 강사 현황과 강의 주요 내용

교육대상 및 분야	강사현황	강의 주요내용
성인	59명	노동인권, 표준근로조건, 권익침해시 구제절차 등
청소년	61명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권리 및 권익침해시 대응방법 등
사용자	77명	노동인권, 표준근로조건 준수 및 노무관리 등
공무원	17명	노동인권, 노동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행정문화 조성 등
합계	214명	

-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추가하고자 교육부에 건의안을 제안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음.

<표 3> 노동교육 관련 건의 및 협의 현황

	진행 경위	건의 및 협의 내용
교육부	15.5. 개선안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등 교과목에 노동권 등 내용 확대 - 특성화 고등학교 노동교육의 대상·내용 확대 및 이수 의무화 - 참여형 교육, 사례제시형 교육, 집체교육(노동인권캠프)으로 학습효과 제고
서울시 교육청	15.5.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체험시간을 활용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확대 추진 - 노동인권교육시 강사파견 협력 및 교육내용 협의 - 공동교재 개발 및 보급 추진

- 그리고 노동교육 사각지대의 해소를 목적으로 근로복지센터가 없는 자치구(강서·동대문·은평·강동·관악·영등포)에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

하여 노동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노동법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다. 근로권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근로기준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의무 등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권 교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근로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의미함.
- 선진국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근로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임금의 산정, 근로계약의 체결, 단체교섭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음. 이런 근로권 교육의 영향으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노사간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공적으로 근로권에 대한 학습과 교육의 제공이 전무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구제수단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근로권에 대하여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근로권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함.

라. 종합의견

-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근로권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안 제8조)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직 우리사회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근로권 교육이 부실하며, 서울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근로권 보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권 교육을 실시한다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동인권의 존중·민주적 노사 관계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권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이하 “근로권 교육”이라 한다)이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근로권 및 각종 근로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시 소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권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근로권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권 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근로권 교육 연구 사례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근로권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근로권 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근로권 교육 실시) 시장은 근로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근로권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3. 그 밖에 근로권 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